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장 정 희 의원)

의 안 변 호	24-12
--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4. 2. .

발의자: 장정희, 고병준, 권영숙, 권인순,  
남해석, 신종갑, 안미자, 채우진,  
한선미

## 1. 제정이유

마포구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,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요청 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나.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조치 사항(안 제5조)

다. 관계기관 협조 및 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## 3. 관계법령

가. 학교급식법 제3조

## 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4. 2. 14. ~ 2. 20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.
2. "학교급식"이란 제1호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.
3. "방사능 등 유해물질"이란 방사능, 중금속, 농약,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지원) 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검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)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식재료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관계기관 및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업무협조 및 의뢰)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학교급식법

[시행 2022. 6. 29.] [법률 제18639호, 2021. 12. 28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,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 
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제4조(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지원) 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검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,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‘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지원’을 요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선역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, 기술적으로도 추계가 어려운 사안에 해당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교육정책과 변민지
연 락 처	02-3153-8954